

수 신 회원사 대표

참 조

제 목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및 해석지침 안내

1.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협회는 건설현장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‘26. 3. 10.부터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노조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건설현장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<주요 개정내용>

- (사용자 범위 확대) 실질적·구체적 지배·결정 지위에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
- (노조 요건 완화)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
- (노동쟁의 범위 확대)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
- (손해배상 제한)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청구시 조합원별 책임비율 산정·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

4. 특히, 건설노조는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현장의 안전·보건관리 등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,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를 대상으로는 임금, 근로시간,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.

5. 이에, 고용노동부는 ‘25. 11. 27.에 우리 협회가 개최한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및 ‘26. 3. 17.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로 하였던 바,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해석 지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해당지침을 숙지하시어 노무관리 및 현장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주요내용

가. 사용자 확대에 관한 지침(제2조제2호)

-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 신설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, 이에 새로 확대된 사용자인 ‘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’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마련

나.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관한 지침(제2조제5호)

-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대상에 ①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, ②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, ③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포함된 바, 새로 확대된 ‘노동쟁의’ 대상에 관한 판단기준 등을 마련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의 해석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

2.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해석지침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



담당자 제도개선실 주임 김기범 과장 이정훈 실장 차성호

시행 전건협 경남 제209호 (2026. 3. 26)

우513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0(전문건설회관 2층)

전화 055-288-8117 전송 055-238-1733 / 전자우편 kkbeom@kosca.or.kr